

#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

□ 존경하는 교육위원장님, 교육위원회 위원님!

더불어민주당 관악구 제2선거구 출신

서윤기 의원입니다.

본 의원 외 12명이 공동발의한

「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」을 제안  
설명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.

□ 본 조례안은

서울특별시 각급 학교의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하여

그 피해를 예방하고, 학생과 교직원이 쾌적한 환경에서

수업과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.

□ 구체적으로 학교석면안전관리와 대상 시설을 규정하고

이를 위한 시행 계획을 수립하는 한편,

학교석면안전관리 실태조사와 석면건축물 안전관리를 위한

조치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.

-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, 호흡을 통해 가루를 마시면 20~40년의 잠복기를 거쳐 폐암이나 석면폐, 악성 중피종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.
  
- 그 위험성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2009년부터 석면이 0.1% 이상 함유된 건축자재 등의 제품에 대한 제조·수입·사용이 금지되었습니다.
  
- 그럼에도 불구하고 석면사용이 많았던 1990년대 이전의 학교 석면 건축물이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.
  
- 따라서 본 조례안을 제정하여 학교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권을 지키고자 합니다.
  
- 그 밖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, 교육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 
감사합니다.